

제2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 래 · 복 지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전문위원 서 선 옥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27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4월 6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4월 6일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2021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¹⁾되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용어정의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안 제2조제2호)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발굴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조항으로 선정되어 개선과제로 확정통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021.1.21.)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해당부서: 지역경제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2. 19. ~ 3. 11.)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호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용어정의를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함

-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의 표현 및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함으로써 여타의 전문성 있는 단체는 진입이 봉쇄되어 경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해당 문구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였음
-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된 문구를 정비하여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